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3일

안 성 시



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도면의 명칭	도면의 번호	행정구역의 명칭	구역의 표시
안성083	NJ52-9-27-083	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평리	준보전산지
용인088	NJ52-9-26-088	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	준보전산지
용인088	NJ52-9-26-088	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	준보전산지
진천003	NJ52-13-6-003	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2. 열람장소

경기도 안성시 산림녹지과(☎031-678-2563)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·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붙 임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. 끝.